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29084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1. 6. 8.

판결 선고2021. 7.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3,434,715원 및 그 중 82,082,942원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9.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9. 17. 접수 제966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5. 6. 19. 주식회사 C(2017. 2. 6.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주식회사 E 연주로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6. 6. 1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반복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9. 6. 11. 이루어진 갱신약정에 따른 최종적인 보증조건은 "보증금액 81,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20. 6. 12.까지"로 변경되었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20. 2. 6.까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퇴임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구상 채무자들은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상하고, 구상 채무자들이 보증기한 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위약금을 변제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2020. 9. 29. 당시의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8%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6. 17.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20. 1. 17. 신용관리정보 등록으로 인한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2020. 5. 1.경부터 소외 은행 대출금 상환에 대한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은행이 2020. 7. 3.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20. 9. 29.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금으로 82,082,9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237,699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77,656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1,160,043원 남아 있고, 보증기한 내에 채무자 회사 및 피고 A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191,730원[= 81,000,000원 × 0.8% × 108/365일(2020. 6. 13.~2020. 9. 28.)]이다.

다.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1. 5. 1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9. 16. 장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9. 17. 접수 제966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채무금 83,434,715원 [= 82,082,942원(대위변제금) + 191,730원(미수위약금) + 1,160,043원(채권보전비용)] 및 그 중 82,082,9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0.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이 2015. 8. 25. F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를 임차하였다가 2018. 8.경 위 전세대출 채무 대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피고 B이 이를 대위변제 하였는데, 피고 A의 처인 I이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아 피고 B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및 피고 A의 사해의사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 J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사실, ②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9. 16.경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은 470,726,995원이었고,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39,500,000원을 포함하더라도 259,5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 소유자인 K을 채무자로 한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56,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 A이 2011. 5. 18. 위 근저당권부 피담조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한 것인데, 2017. 8. 28.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설정된 제한물권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B 주장과 같이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또한 앞서 본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2) 피고 B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상근

별지